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36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정비기준에 따른 오탈자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19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3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 안 제60조, 안 제76조, 안 제81조의2제2항)
- 조항 수정(안 제8조제2항, 안 제19조제3항)
 - 선거 시기 및 의안 제출기한을 재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항 수정(안 제9조제2항, 안 제47조제1항)

-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 정비
-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조항 수정(안 제87조제4항 및 제5항)
 -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문 신설(안 제88조)
 -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미**”를 “**맞**”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끝나는 날 전 5일**”을 “**만료일 전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시작**”을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로, “**날로**”를 “**날까지로**”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전원 동의를,**”을 “**전원이, 동의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기타**”를 “**공무원, 그 밖의**”로, “**배부된**”을 “**배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된**”으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회의록 기타**”를 “**회의록, 그 밖의**”로 한다.

제76조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8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제8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8조를 제89조로 하고,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 수	의회사무과 - (20 . . . :)
-----	--------------------------

임실군의의회

수신 : 임실군의의회의장

제목 : ○○○ 조례안 철회 요구

년 월 일 의원이 발의(외 인)한 위
의안을 「임실군의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
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구 자 인

외 인

(요구자 서명부 붙임)

※ 철회요구자는 발의자가 되며 발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발의
자 전원이 철회 요구하여야 함.

【○○○ 조례안 철회 요구】

서 명 부

연 번	의 원 성 명	서 명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28조의2 관련)

신청의원		서명	
발언일자	제 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정례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		
발 언 취 지			
접 수	의회사무과 - (. . . :)		

임실군의회 일반방청 신청서

성명			
주소	시·군·구 읍·면·리(동)까지만	전화번호	
소개의원	있을 경우만 기재		
방청장소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을 기재		
방청희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임실군의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의회 단체방청 신청서

단 체 명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시·군·구, 읍·면·리(동) 주민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시·군·구, 읍·면·리(동)까지만	전화번호	
방 청 희망자수		소개의원	있을 경우만 기재
방청장소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을 기재		
방 청 희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임실군의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 지]

방청인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나이)

임실군의회 장기방청 신청서

성명		단체(기관)명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시·군·구, 읍·면·리(동) 주민
주소	시·군·구, 읍·면·리(동)까지만		전화번호
소개의원	있을 경우만 기재		
방청장소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실을 기재		
방청 희망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귀 의회를 방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임실군의회 의장 귀하 임실군의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미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 ----- -----. ----- 및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 끝나는 날전 5일 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 ⑤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만료일 전 5일 이내 ----- ----- <단서 삭제>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시작 후 2년이 되는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

날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
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④ (생략)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군보
나 군의회 홈페이지에 심사예고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
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생략)

날까지로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일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

----- 누리집-----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

---- 누리집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6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6조(방청의허가) 의장은 방청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

----- 전원이, 동의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공무원,
그 밖의 ----- 배부(누
리집에 게재하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같음
할 수 있다)된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 회의록, 그 밖의 ---

-----.
-----.

제76조(방청의허가) 의장(위원회

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는 위원장)-----

---.

제81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누리집을 -----

-----.

1. ~ 6. (현행과 같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

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간으로 한다.

제8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

<u>제88조</u> (생략)	<u>언·진술·자문·연구·용역</u> <u>또는 감정을 한 경우</u> 4. <u>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u> <u>·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u> <u>정이 있는 경우</u> ② <u>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u> <u>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u> <u>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u> <u>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u> <u>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u> <u>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u> <u>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u> <u>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u> ③ <u>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u> <u>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u> <u>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u> <u>피해야 한다.</u> <u>제89조</u> (현행 제88조와 같음)
-------------------------	--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